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켜
- 훼손된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시설물분 : 연면적 160m²이상인 건축물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 2회(6월30일, 12월31일)

□ 추진계획

- 정기분 부과·징수
 -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1월, 7월
 - 부과자료(시설물, 자동차) 전산입력 : 2월, 8월
 - 정기분 고지서 발송 : 3월, 9월
- 과년도 체납액 징수
 - 독촉고지서 발송 : 4회(상반기 3월, 5월, 하반기 9월, 11월)
 - 체납 징수반 및 고액체납자 담당자 편성운영 : 2개반 4명
 - 부과대상 부동산, 자동차 및 대체재산 압류조치
 - 체납자 현지실태조사 실시 및 납부독려
 - 결손처분 : 시효경과, 행불자 등 징수 불능액

□ 기대효과

-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 부담으로 오염원 저감유도
- 체납자 집중관리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

자연의 빛깔을 꿈꾸는 녹색교실

그동안 연차적으로 양성한 자연생태 안내자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자연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민의식을 심어주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6. 3월 ~ 12월
- 강 사 : 자연생태안내자 25명
- 교육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교사, 장애인, 초중생, 일반시민 등
- 소요예산 : 10,100천원

□ 추진계획

- 자연체험교실 운영 : 15회 1,000명
 - 작동산 생태교실, 환경교실, 어린이 갯벌탐사, 어르신 생태교실 등
- 자연생태 봉사활동 : 20회 1,500명
 - 어린이집 생태자연학습, 장애아동 생태나들이, 작동산 자연보호활동
- 자연생태안내자 심화교육 : 학습모임 월 1회(25명)
- 환경기념일 행사 : 4회
 - 물의 날(3. 22), 식목일(4. 5), 지구의 날(4. 22), 환경의 날(6. 5)
- 자연생태 학습교재 제작 : 연 2회(동물, 식물, 곤충을 수록)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 2회(겨울철 먹이주기)

□ 기대효과

- 자연환경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마을 조성
- 자연생태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자발적 환경보전의식 고취

먼지없고 깨끗한 오정구 건설

생활주변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먼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레미콘공장 밀집지역 및 여월택지개발사업장 등 대형공사장을 특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목 표 : 먼지없고 깨끗한 오정구 (환경기준 $70\mu\text{g}/\text{m}^3$ 유지)
- 위 치 : 오정구전역(삼정동 레미콘공장밀집지역, 여월택지개발사업장 등)
- 사업장 먼지 관리
 - 대형공사장 및 레미콘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 일반관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
- 동절기 농지 형질 변경 사업장 관리
 - 휴작농지에 대한 복토작업 사업장 특별 관리

□ 추진계획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 환경관리 능력에 따른 등급별 차등 상시 점검
 - ▶ 특별관리 공사장 : 2회/년
 - ▶ 일반공사장 : 1회/년
-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조사 : 수시
- 휴작농지 복토사업장 : 1회/년
- 레미콘사업장 특별관리 : 2회/년

□ 기대효과

- 먼지없고 깨끗한 오정구 건설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
-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

앞서가는 선진환경 구현

- 생활주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오정구민들이 환경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앞서가는 선진환경 구현.

□ 사업개요

- 공해배출업소 등급 지정에 의한 자율 환경관리 유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및 생활악취업소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소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실시
- 소음공해(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관리
- 폐기물(감염성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
- 환경불편신고 센터 운영

□ 추진계획

- 생활주변의 오염원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및 무료측정소 운영
 - ▶ 정기단속 : 2회/월, 무료측정소 운영 : 상시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 상시
 -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 4회/년
 - VOC 배출사업장 관리 : 1회/년
- 소음공해관리
 - 공장소음배출업소 등급별 차등 지도 점검 : 1 ~ 3회/년
 - 생활소음, 교통·이동소음 관리 : 수시
 -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 1회/분기(2개 지역)
-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 감염성, 배출시설계, 소규모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2회/년
-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 : 수시
- 환경불편신고 센터 운영 : 상시

□ 기대효과

-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앞서가는 선진환경 구현
- 시민이 느끼는 체감오염도 저감 및 예방적 환경행정 체계구축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환경 조성

- 청소장비 기계화와 가용 인력관리의 최적운영으로 청결한 주거환경 구현
- 활발한 주민참여와 효율적 불법투기 단속으로 성숙된 청소 질서의식 확립

□ 사업개요

- 청소주체별 효율 극대화추진 :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체제구축
- 청소민원의 신속처리 : 미화원, 기동반, 청소대행업체 등 현장처리
-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 경로당 웃어른, 봉사단체, 학생 등

□ 추진계획

- 가로청소의 선진화 : 8m이상도로 120.9km(1인당 2.58km)
 - 가로청소 3개반 47명 : 1일 2회 구역청소(05:00~09:00, 13:00~17:00)
 - 대형노면청소차(3대) : 종로(12m)이상 156.6km 이상 전구역 순회 중점청소
 - 고압살수차 (2대) : 1일 15km 고압살수로 산업길, 고가도로 등 전구역 청소
 - 노면청소 및 살수차 운행철저 : 격일로 운행일지 현장확인점검
- 청소민원의 즉시처리체제 : 환경기동반, 청소대행업체 등
 - 청소민원 현장 바로조치 : 환경기동반 2개반 8명(1톤 더블캡 2대)
 - 생활 및 대형폐기물수거 청소민원 : 4개 청소대행업체
 - 청소취약지 대상 생활환경정비 지속추진 : 공공근로 50여명 현장정비
- 청소 질서의식 정착화 : 불법투기 예방 및 자율청소 붐 조성
 - 폐기물 정시수거 및 불법투기단속 : 현장점검 및 월8회 집중계도(단속)
 - 주민참여 불법투기 단속 실시 : 월2회 환경지킴이 50명
 -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 : 7,000천원 예산편성
 - 경로당어르신 자율청소 참여유도 : 청소서포터140명(동별 2개 경로당)
 - 지원물품 : 근무복(조끼), 종량제 봉투, 빗자루, 쓰레받기 등

□ 기대효과

- 청소인력 및 장비, 청소시스템의 극대화로 청결한 생활환경 제공
- 활발한 주민참여와 신속한 청소현장 처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행정지도로 수질오염 근원적 차단
- 종합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정화조현황 : 10,140개소(단독 9,851 오수처리 288, 축산폐수 1)
- 정화조 소유자에 대한 청소의무사항 고지 : 년1회
- 오수처리시설 현장 지도점검 : 년 1회 289개소 방문점검
- 공중화장실 현황 : 113개소
 - 공공청사 8, 개방화장실 46, 주유소 39, 공원 7, 약수터 5, 기타 8

□ 추진계획

-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조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 년1회
- 신설 정화조 수질검사 및 관리 : 발생시 수시/90일 경과후
-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 : 월 1회/청소시기 도래 1월전
 - 안내엽서 별도제작 : 청소 법적사항, 관내 청소업체 등 기재
-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 청소독촉 안내공문 발송 : 4회 / 분기별
-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년 1회
- 방류수 수질검사 부적합 정화조 과태료 부과 : 수시
-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실시 : 년 1회(필요시 수시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관리인 지정여부, 주 1회 소독실시(4-6월은 주3회) 등

□ 기대효과

-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홍보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
- 강력한 행정지도와 사전계도로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 유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생활화

- 2005년 젓은 쓰레기 직 매립 금지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을 생활속에 정착하여 자원화로 재활용율을 높여 보다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 현황
 - 총 68,253세대(공동주택 13,011, 단독·소형공동 53,466, 음식점 및 집단급식 1,766)
- 주요 사업내용
 - 공동 주택, 단독 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 중·소형음식점 계약배출 통한 분리수거 정착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 이행 철저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강화 : 3종 70,000부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에 따른 홍보물 배부
 - 각종주민단체 회의시 교육 및 홍보 : 연 중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실시 : 2006. 4월, 9월
 - 대 상 : 146개소(일반음식점 113, 집단급식소 33)
 - 점검내용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이행 여부, 일일처리대장 작성
- 중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미계약 업소 계약배출 홍보 : 연중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관련 홍보 : 연중
 - 22리터용기 : 주민 자발적 참여
 - 60, 120리터용기 : 수거업체 추진(현 수동식→자동식세척으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 적발 행정조치 : 수시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를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줄여 음식물처리비용 절감 및 토양오염 예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함양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생산에 이바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 3,346개소
- 재활용 의무 대상 시설(연면적 1,000m²이상 시설물) : 552개소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세대 현황
 - 총 66,477세대 (공동주택 : 13,011, 단독, 소형공동주택 : 53,466)

□ 추진계획

-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 2종 80,000부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재활용 의무이행 시설의 의무사항 중점홍보
 - 재활용수거체계 개선 전면실시 대비 주민홍보 확대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지속적인 관리 : 연중
 - 파손, 분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의 지속적 보급
-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업소 지도·점검 : 4회 3,346개소
 - 위반업소 신고자포상금 지급 : 연중
- 재활용이행 의무대상 시설물 지도점검(552개소)
 -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및 의무사항 홍보물 배부 : 상반기
 - 지도점검실시(5월 300개소, 9월 252개소) : 2회/년
- 재활용품 수거현황 동별 로드체킹 : 연중
 - 미 수거 및 무단적치 재활용품의 수거조치
- 주택가 등 재활용품 수거 현장 지도 점검 : 연 중

□ 기대효과

-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
- 폐기물을 자원화 및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